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증여성 송금 :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5만불 상당액 이하, 다만, 건당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해외체재자/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송금 : 건당 미화10만불 상당액 이하
3. 외국인근로자 보수송금 : 등록된 한도 내에서 1일 누계 미화5만불 상당액 이하, 다만, 한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연간 미화5만불 상당액 이하
4. 국내이체 : 건당 미화10만불 상당액 이하

② 이용자가 은행의 자동화기기 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제1항의 송금거래를 하는 경우 이 서비스 송금한도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제3조(송금전용계좌)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은행에 송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② 송금전용계좌는 원화보통예금 및 외화보통예금에 한하며 원화보통예금은 비거주자유원계정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 ③ 송금전용계좌는 이용자가 지정한 용도로 외화송금을 하기 위한 자금의 입출금거래와 송금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의 송금대금 반환을 위한 출금거래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송금전용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화로 송금됩니다. 다만, 송금이 처리되기 전에 이용자가 은행에서 정한 사고신고 절차에 따라 송금철회를 요청한 경우 은행은 송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⑤ 송금이 처리되지 아니하여 잔액이 있거나 지급정지 또는 입금정지 된 송금전용계좌에는 송금을 위한 자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은행영업일 18:00부터 다음 영업일 08:50까지는 송금전용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⑥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당 100,000원미만, 외화송금전용계좌에는 건당 미화 100

불 상당액 미만의 금액 및 외화현찰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출국만기보험금의 경우 해당 입금액이 50,000원이상인 경우에는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 이용,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 또는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5조(송금정보 등록)

이용자는 송금용도, 송금통화 및 수취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등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등록된 송금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송금의 처리기준)

- ① 이용자가 송금전용계좌에 송금대금을 입금하면 입금시간에 따라 은행은 아래와 같이 송금을 처리합니다. 다만, 거래외국환은행 미지정(미갱신 포함), 송금한도 초과, 유학생·해외체재자 입증서류 미제출, 송금전용계좌 지급정지 및 기타의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송금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송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입금 시간	송금 처리
은행 영업일 08:50~18:00	입금 즉시 송금처리 (다만, 08:50~09:00 입금은 당일 09시 이후 송금처리)
은행 영업일 18:00~24:00, 토·일요일/공휴일	다음 영업일 09시 이후 송금처리 (다음 영업일 08:50 최종 잔액으로 송금)
은행 영업일 00:00~08:50	당일 09시 이후 송금처리 (당일 08:50 최종 잔액으로 송금)

-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송금요건이 미비되어 송금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요건 보완 후 재송금 하거나 송금대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송금외화금액)

이용자가 송금전용계좌에 입금한 원화금액에서 송금일자에 은행이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차감한 잔액이 송금되며 송금외화금액의 보조단위 미만은 절상됩니다.

제8조(적용환율)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시점에 은행이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됩니다.

제9조(송금지시의 취소·변경)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행한 송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송금처리결과 통지)

이용자가 송금처리결과 통지를 위한 수단(매체)을 등록한 경우 은행은 당해 수단(매체)을 통하여 송금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대외은행 수수료)

결제은행 등 대외은행의 수수료를 송금인 부담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부가서비스)

- 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이용자가 환율우대 없이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을 해외로 보수 송금하는 경우 송금전용계좌 해지시까지 은행이 정한 외국인상해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② 보험가입시 제후보험회사 앞으로 개인식별정보(고객명, 실명번호, 성별)와 송금거래 정보가 제공 됩니다.

제13조(면책)

- ①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등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제6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송금요건이 미비 등 은행이 책임 없는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외국환거래법규”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제 6조를 적용(준용) 합니다

2019. 5. 23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9-약관-085호